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은 국세청, 1명(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조달청, 1명(소방경 1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9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구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3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8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법 제3장제1절의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①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가습기살균제사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팀 서무 및 용역 관리
2. 팀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 팀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이하 "가습기살균제사건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신청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어 위원회가 재조사 개시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조사신청

사건에 대한 재조사

9.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0. 제8호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1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추진 경과 국회 보고

1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3. 기타 위원장 또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②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

기획과, 세월호 조사1과, 세월호 조사2과 및 세월호 조사3과를 두되,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현행과 같음)

11.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2.~13. (현행과 같음)

④ 세월호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조사

5.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⑤ 세월호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4·16세월호참사 관련 각종 증거자료 은폐 등 증거 조작에 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⑥ 세월호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2.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사항

제8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안전사회국)③재난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피해지원국
에 대한 업무 지원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피해지원국)③피해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안전사회국
에 대한 업무 지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추모시설 송부 대상 등) ① 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
- ② 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 송부의 시기는 법 제50조에 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 중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자료의 사본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사본으로 구분하여 각 대응하는 추모시설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모시설이 위원회 잔존사무처리기간 종료 시까지 건립되지 않은 경우 송부되어야 할 자료의 사본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추모시설이 건립되는 즉시 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추모시설의 장이 협의하여 송부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송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송부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 삭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04호) 제6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이 2020.12.22. 이전에 수행하던 직권조사 사건의 관련 업무는 제6조의3 신설에 따라 설치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 ② (생략) ③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3명(감사관 1명, 부감사관 2명)은 감사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교육부,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은 법무부, 7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3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환경부, 1명(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2명, 행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무조정실,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명)은 국세청, 3명(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조달청,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1명(소방경 1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제6조(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은 국세청, 1명(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조달청, 1명(소방경 1명)은 소방청 -----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삭 제>

① ~ ⑥ (생략)				
<신설>	제6조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9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구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3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8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건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법 제3장제1절의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팀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전에 대한 점검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사건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신청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어 위원회가 재조사 개시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조사신청사건에 대한 재조사 9.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0. 제8호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신설>	제6조의3(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①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팀 서무 및 용역 관리 2. 팀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① (생략) ②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기획과, 세월호 조사1과 및 세월호 조사2과를 두되,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감사관으로, 세월호 조사1과장 및 세월호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생략) 1.~10. (생략) 11. <u>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u> 12.~13. (생략) ④ (생략) 1.~3. (생략) 4. <u>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u>	11. <u>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추진 경과 국회 보고</u> 12. <u>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u> 13. <u>기타 위원장 또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u>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세월호 조사2과 및 세월호 조사3과를 두되,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u>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u> 12.~1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u>		<u>보고서 작성</u>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⑤ (생략) 1. (생략) 2. <u>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u> 3. <u>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점검</u> <u><신설></u> 4. <u>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u>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u><신설></u>	<u>한 점검 및 조사</u> 5. <u>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u>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⑤ ----- 1. ----- 2.~3. (삭제) 2. <u>4·16세월호참사 관련 각종 증거자료 은폐 등 증거 조작에 대한 조사</u> 3. <u>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u>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⑥ <u>세월호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u> 2. <u>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u>
--	---	--	--	--

제8조(안전사회국)③(생략)	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사항
1.~12. (생략)	제8조(안전사회국)③-----
13. <u>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u>	13. <u>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u> ,---
<u>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u>	-----
<u>피해자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u>	-----
14.~15. (생략)	14.~15. (현행과 같음)
제9조(피해지원국)③(생략)	제9조(피해지원국)③-----
1.~10. (생략)	1.~10. (현행과 같음)
11. <u>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u>	11. <u>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u> ,---
<u>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안전</u>	-----
<u>사회국에 대한 업무 지원</u>	-----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12조의2(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u>
	<u>추모시설 송부 대상 등) ① 법</u>
	<u>제4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료</u>
	<u>송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u>법 제5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u>
	<u>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u>
	<u>규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u>
	<u>접수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u>
	<u>지정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u>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u>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u>
	<u>법」에 따른 4·16세월호참사</u>
	<u>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조</u>

	<u>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u>
3. 「 <u>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설치</u>	
<u>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u>	
<u>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u>	
<u>사 자료, 조사결과 및 증거물 등</u>	
<u>일체</u>	
② <u>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u>	
<u>료 송부의 시기는 법 제50조에</u>	
<u>따른 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u>	
<u>중으로 한다.</u>	
③ <u>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u>	
<u>참사자료의 사본을 가습기살균</u>	
<u>제사건과 관련한 자료의 사본과</u>	
<u>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u>	
<u>의 사본으로 구분하여 각 대응</u>	
<u>하는 추모시설로 송부하여야 한</u>	
<u>다. 다만, 추모시설이 위원회 잔</u>	
<u>존사무처리기간 종료 시까지 건</u>	
<u>립되지 않은 경우 송부되어야</u>	
<u>할 자료의 사본을 관할 영구기</u>	
<u>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u>	
<u>하게 한다.</u>	
④ <u>제3항 단서에 따른 관할 영구</u>	
<u>기록물관리기관은 추모시설이 건</u>	
<u>립되는 즉시 자료의 사본을 추모</u>	
<u>시설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u>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추모시설의 장이 협의하여 송부 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송부의 시기, 방 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관 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 협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자료 송부의 대 상·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2항 관련)

총 계	125
정무직 계	5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차관급)	4
별정직 계	99
고위공무원단	4
4급 상당 별정직	12
5급 상당 별정직	27
6급 상당 별정직	37
7급 상당 별정직	19
일반직 계	2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부감사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9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세무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재 안전주사	6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1
특정직 계	1
소방경	1